

비과세종합저축 세제지원특약

특약 약관

[2026 년 1 월 개정]



BNP PARIBAS CARDIF
BNP파리바 카디프생명

변화하는
세상을 위한
보험사

목 차

제 1 조 【목적】	3
제 2 조 【용어의 정의】	3
제 3 조 【특약의 성립】	4
제 4 조 【특약의 소멸】	4
제 5 조 【가입한도】	4
제 6 조 【계약의 세제혜택 등】	4
제 7 조 【준용규정】	5

비과세종합저축 세제지원특약 약관

※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.

제1조 【목적】

이 특약은 보험회사(이하 '회사'라 합니다)가 주된 보험계약(이하 '주계약'이라 합니다)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.

제2조 【용어의 정의】

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,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. 다만, 이 특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.

1. 계약자: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. 계약자는 소득세법 제 1 조의 2(정의)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88 조의 2(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 특례)의 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.
2. 보험수익자: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, 계약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.

【해설: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】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(제 89 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)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(이하 이 조에서 "비과세종합저축"이라 한다)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1.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 32 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3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 6 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6 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(傷痍者)
5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수급자
6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
7. 「5 · 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 4 조제 2 호에 따른 5 · 18 민주화운동부상자

제3조 【특약의 성립】

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'비과세종합저축'으로 신청한 경우 주계약에 부가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 【특약의 소멸】

주계약이 해지,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.

제5조 【가입한도】

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2 조의 2(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)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납입 가능한 보험료 총액은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 계약금액을 포함하여 1 명당 5 천만원[조세특례제한법 제 89 조(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)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였고, 이를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경우 5 천만원에서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]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주계약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등은 가입한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
② 비과세종합저축계약금액은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 보험료 중 일부만을 정할 수 없습니다.

제6조 【계약의 세제혜택 등】

- ①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에 조세특례제한법 제 88 조의 2(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)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가입하고 과세특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약환급금 및 만기보험금(배당금 포함)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전액 소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. 다만,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·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제7조 【준용규정】

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, 조세특례제한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